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700	⑤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⑤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13만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 2천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701	(9)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9)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707	㉡ 기초일액이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을 해당 기초일액으로 한다.	㉡ 기초일액이 13만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 2천원을 해당 기초일액으로 한다.
709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710	(3)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 ② 피보험자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 교재 내용 모두 삭제	(3)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713	(3)기금의 용도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 ④ 보험료의 반환 ⑤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3)기금의 용도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④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 ⑤ 보험료의 반환

	⑥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⑥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⑦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14	(4)심사의 청구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4)심사의 청구 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715	②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